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페스티벌’ 협약서

‘(재)서울산업진흥원’ (이하 SBA)과 ‘(주)인벤’ (이하 인벤)은 ‘SBA’가 주최한 ‘2017 서울시 AR·VR 게임 관련 국제행사 개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의 공동 주관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AR·VR 게임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브랜드제고를 위해 ‘SBA’와 ‘인벤’이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공동 주관에 관한 협약 전반의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 개요)

1. 행사명 :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
2.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고분, 석촌호수, 롯데타워, 명동 재미로&재미랑, 남산 백범광장 등
3.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 24일(일)
4. 내 용
 - Ingress Seoul Anomaly : AR 게임 ‘Ingress(인그레스)’ 기반의 오프라인 국제 대회
 - AR·VR과 함께 떠나는 석촌고분 역사 탐방행사 : 서울시 역사 문화자산 활용한 시민참여형 행사
 - 명동 재미로·재미랑 탐방행사 : 명동 재미로·재미랑 및 애니메이션센터 일대의 서울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행사
 - 부대행사 : 네트워킹 파티, 미션 데이, VR 어트랙션 이벤트 등 각종 행사
5. 행사 내용 및 명칭은 위의 각호와 같으나 ‘SBA’와 ‘인벤’ 상호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역할과 의무)

1. 'SBA'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용 부담

- 가. 운영 인력 인건비
- 나. 행사 홍보(바이럴/미디어 홍보)
- 다. 행사장 세팅 및 운영
- 라. 체험 전시 행사 및 공연 운영
- 마. 기념품 제작

2) 홍보 지원 : SBA 내부 자원 활용

2. '인벤'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운영 및 진행

2) 광고 및 홍보

가. 온라인 배너광고(특집 고정 배너, Big T.I. 배너, 일반 배너)

나. 행사 특집 웹페이지 운영



3. 기타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지원금 관리)

1. '인벤'은 사업지원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계좌번호(1005-403-303668, 우리은행), 예금주 '주식회사인벤'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2. 'SBA'는 '인벤'이 수행하는 지원금 사용, 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

1. 'SBA'는 상기 제3조 제1항의 내용으로 일금 일억 원(\100,000,000-/부가세포함)을 지원하고, '인벤'은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일금 이천오백만원 (\25,000.000-/부가세포함)의 인벤 광고 상품을 제공한다.

2. 협약 시 '인벤'은 'SBA'에게 이행보증각서를 동시 날인 후 제출한다.

3. 'SBA'는 협약체결후 '인벤'이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4. 'SBA'가 '인벤'에 지급해야 하는 '선금'은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개최 이전에 지급한다.
5. '인벤'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결과 제출 및 지원금을 정산하고, 'SBA'는 '인벤'에게 나머지 잔금 50%를 지급한다.

제6조 (지원금의 사용)

1. '인벤'은 'SBA'와의 협약을 통해 지급받은 지원금을 협약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SBA'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상기 제4조 제1항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 1)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 행사 기획, 운영, 홍보 및 행사장 세팅(Ingress Seoul Anomaly, AR·VR과 함께 떠나는 석촌고분 역사 탐방행사, 명동 재미로·재미랑 탐방행사)
 - 2) 기타 부대행사: 행사 기획, 운영, 홍보 및 행사장 세팅

제7조 (사업수행 결과 제출) '인벤'은 현장 사진첩 및 운영 결과 등 최종결과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SB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정산 보고 등)

1. '인벤'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활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SBA'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과 기타 지급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SBA'는 '인벤'이 제출한 지원금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한다.
 - 1)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된 사업비.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가. 사업기간 중 집행지원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협의 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비용

- 2) '인벤'이 보고한 사업비 사용실적 내용 중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하여 'SBA'가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3) 변경협의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제9조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

1. '인벤'은 지원금 중 집행잔액 및 지원금의 발생이자를 협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BA'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납하고, 일금내역서를 즉시 'SB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벤'은 제8조 3항에 의해 회수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회수 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SBA'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에 대하여 '인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을 지연하는 경우 'SBA'는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제출요구)

1. 'SBA'는 필요한 경우 '인벤'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 진행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SBA'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인벤'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 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7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AR·VR 국제 페스티벌'종료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제12조 (협약 해약)

1. 'SBA'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사업 활동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인벤'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협약의 해약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SBA’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 규정 및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SBA’와 ‘인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기타) ‘SBA’와 ‘인벤’은 상호 신의성실의 자세로 사업에 임하며, 본 약정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사항은 비밀로 유지하며 제 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SBA’와 ‘인벤’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18일

(재)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대표이사 주형철 (인)



주식회사 인벤 (인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7층 1701호(정자동, 킨스타워)

대표이사 배혜농 (인)

